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60 발의연월일 : 2020. 12. 2.

발 의 자:주철현·민형배·소병훈

양경숙ㆍ이규민ㆍ이병훈

이용빈 · 인재근 · 최종윤

신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,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,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음.

이로 인하여 원제업자,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, 보관, 저장하는 중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감사원도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.

주요내용

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, 장비,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 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 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3 신설 등).
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3(영업의 허가 등) ①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 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 제3조제1항 전단 중 "제조업·원제업 또는 수입업"을 "제조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조업 또는 수입업"을 "제조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제조업 또는 수입업"을 "제조업"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, 제3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원제업자등"이라 한다). 제3조제1항"으 로 하고.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조업자등"을 "원제업자 등 또는 제조업자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· 제2호 및 제3호 중 "제조업자등"을 각각 "원제업자등, 제조업자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제조업자등"을 각각 "원제업자등 또는 제조업자등"로 하며, 같 은 조 제3항 중 "제조업자등"을 "원제업자등, 제조업자등"으로 한다. 제5조의2 본문 중 "제조업자등"을 "원제업자등, 제조업자등"으로 한다. 제6조제1항 중 "제조업자등"을 "원제업자등, 제조업자등"으로 한다. 제7조의 제목 중 "등록"을 "허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원제업 또는 수 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조제1항"으로, "제조업 · 원제업 또는 수입업"을 "제조업"으로, "등록을"을 "허가 또는 등록을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등록"을 "허가 또는 등록"으로 하고, 같 은 항 제1호 중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"으로 하며. 같은 항 제13호 중 "등록"을 "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"으로 하 고, 같은 항 제15호 중 "등록한"을 "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"으로 하다.

제23조제3항 중 "제3조제3항"을 "제2조의3제2항·제3조제3항"으로, "제조업자·수입업자"를 "수입업자·제조업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조업자·수입업자"를 "수입업자·제조업자"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"제조업자·원제업자·수입업자"를 "원제업자·수입업자·제조업자"로,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제3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제업·수입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

1의2. 제3조제1항,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업·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

제29조제1호 중 "등록취소"를 "허가취소, 등록취소"로 한다.

제31조의3제1항제1호 중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2조제1호 중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3조제1호 중 "제3조제1항"을 "제2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

자 또는 제3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의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조의3(영업의 허가 등) ① 원
	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
	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
	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
	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
	<u>또한 같다.</u>
	②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
	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
	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기준
	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
	여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
	받아야 한다.
	③ 제2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
	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
	에 따라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
	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
	는 제2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
	지정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
	한다.
	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
	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

저	3조(영업의 등록 등	F) ① <u>저</u>	조업
	·원제업 또는 수	<u>입업</u> 을	하려
	는 자는 농림축산	식품부령	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	농촌진	흥청
	장에게 등록하여야	한다.	등록
	한 사항 중 농림	축산식품	부령
	으로 정하는 중요형	한 사항	을 변
	경하려는 경우에도	또한 길	낱다.
	② (생 략)		

-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⑤ (생략)

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
맞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
<u>갖추어야 한다.</u>
제3조(영업의 등록 등) ① <u>제조업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제조업</u>
4
제조업
⑤ (현행과 같음)
'

1. ~ 6. (생략)

제5조(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) 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(이하 "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자(이하 "수출입식물방제업자"라 한다)의 지위를 승계한다. 다만,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없다.

1. <u>제조업자등</u> 또는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

세4소(결석사유)
레2
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
받을 수 없으며, 제3조제1항
<u> 본을 구 없으며, 제3소제1성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)
①
제2조의3제1항
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(이하
"원제업자등"이라 한다), 제3조
제1항
ما باما ـا ت
<u>원제업자등</u>
<u> 또는 제조업자등</u>
1. 원제업자등, 제조업자등

상속인

- 2. <u>제조업자등</u> 또는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- 3. 법인인 <u>제조업자등</u> 또는 수 출입식물방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
- ② 제1항에 따라 <u>제조업자등</u>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임명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<u>제조업자등</u>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 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 에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, 시

2. 원제업자등, 제조업자등
3원제업자등, 제조업자
<u> </u>
②원제업자등
또는 제조업자등
원제업자등 또는 제조
업자등
③ <u>원제업자등</u> ,
<u>제조업자등</u>

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국립식 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다. 제5조의2(행정처분 효과의 승계) 제5조의2(행정처분 효과의 승계)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 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 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업자등, 제조업자등-----자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 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, 행 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 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6조(폐업의 신고) ① 제조업자 제6조(폐업의 신고) ① 원제업자 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등, 제조업자등-----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, 시장・군수 • 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

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• ③ (생 략)

제7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농촌진 저 흥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·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(이하 각각 "제조업자", "원제업자" 또는 "수입업자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2·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<u>제3조제1</u> <u>항</u>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한 경우

1의2. ~ 12. (생 략)

- 1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<u>등록</u>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
- 14. (생략)
- 15. <u>등록한</u>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~ ④ (생 략)
- 제23조(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저 등) ①・② (생 략)
 -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 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·수입 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 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 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 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 - ④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 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~ ⑦ (생 략)
 ⑤ ~ ⑦ (현행과 경제24조(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 제24조(유통 농약 및

13.	
_	<u>허가 또는</u>
Ħ	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
_	
14.	(현행과 같음)
15.	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
	<u></u>
	<u>-</u>
(2)	~ ④ (현행과 같음)
	조(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
	①·② (현행과 같음)
	제2조의3제2항 · 제3조제3항
	<u>수</u>
<u>입</u>	<u> </u>
(4)	수입업자 • 제조업자
5	~ ⑦ (현행과 같음)
세 24 2	지(유통 농약 및 농약확용기

자재의 검사 등) ① 농촌진흥 청장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 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시장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 역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조업자 · 원제업자 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또는 방 제업자(제3조제1항 전단, 제2항 전단 또는 제3조의2제1항 전단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 는 자를 포함한다)가 제조 • 수 입 · 보관 · 진열 · 판매 또는 사 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, 농약 활용기자재나 그 재료, 관계 장 부 또는 시설·장비를 검사하 게 할 수 있으며, 농약이나 그 원제,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 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 하게 할 수 있다.

② ~ ⑧ (생 략)② ~ ⑧ (현행제28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28조(수수료) ①

자재의 검사 등) ①
<u>원제업자·수입업자·제조업</u>
<u>자</u> <u>제2</u> 조의3제1
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
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
또는 제3조제1항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메28조(수수로) ①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1. 제3조제1항, 제2항 또는 제4 항에 따라 제조업·원제업· 수입업·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

<신 설>

- 2. ~ 7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
- 제29조(청문) 농촌진흥청장, 시장 ·군수·구청장 또는 국립식물 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<u>등록취</u>
 소 또는 영업소 폐쇄
 - 2. · 3. (생략)
- 제31조의3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

1. 제2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
따라 원제업ㆍ수입업의 허가
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
자
제4항에 따라 제조업ㆍ판매업
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
청하는 자
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청문)
1
<u>허가취</u>
<u>소, 등록취소</u>
2.·3. (현행과 같음)
제31조의3(벌칙) ①

-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 ·수입·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
- 2. (생략)

② (생략)

- 제3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 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·수 입·판매를 업으로 한 자
 - 2. 3. (생략)
 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, 제2항 전단, 제8조제1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 또는 제1

1. 제2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
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
나 제3조제1항
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32조(벌칙)
,
1. 제2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
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
<u> 이 가 의기를 받게 가라이기</u>
<u> 나 제3조제1항</u>
<u>나 제3조제1항</u>
<u>나 제3조제1항</u>
<u>나 제3조제1항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
<u>나 제3조제1항</u>
<u>나 제3조제1항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
<u>나 제3조제1항</u>

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 에 따른 신고를 한 자

5. ~ 11. (생략)

- 제3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<u>제3조제1항</u>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

1의2. ~ 3. (생략)

5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33조(벌칙)
1. 제2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
하여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
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
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
또는 제3조제1항

1의2. ~ 3. (현행과 같음)